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 추가 등〉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27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1. 14.
3.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6항).

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립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

적 절차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라.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

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

정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

·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IV. 검토의견

1.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 추가 등(안 제6조제2항 및 제6항)

□ 개정안 제6조제2항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¹⁾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장려 방식을 ‘모두 장려’에서 ‘적극적 장려’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에-----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⑥ ----- ----- -----적극적으로-----.

1)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를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의 경비 지원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추가 관련

□ 먼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²⁾에서는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의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현황 〉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연번	권역	운영주체(소재지)	연번	통일관	운영주체
1	서울	송실대학교(서울)	1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부(위탁 : 코오롱 LSI)
2	경기.인천	아주대학교(경기)	2	서울 통일관	서서울생활과학고
3	경남.부산.울산	동의대학교(경남)	3	부산 통일관	자유총연맹(부산지회)
4	경북.대구	대구대학교(경북)	4	인천 통일관	자유총연맹(인천지회)
5	전남.광주	전남대학교(전남)	5	광주 통일관	(사)우리민족
6	전북	(사)전북거례하나(전북)	6	양구 통일관	양구군
7	충남.대전.세종	단국대학교(충남)	7	고성 통일관	(주)통일전망대

- 2)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연번	권역	운영주체(소재지)	연번	통일관	운영주체
8	충북	청주대학교(충북)	8	청주 통일관	청주시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9	강원	한라대학교(강원)	9	충남 통일관	자유총연맹(충남지회)
10	제주	제주대학교(제주)	10	경남 통일관	자유총연맹(충남지회)
-	-	-	11	전남 통일관	전라남도(통일플러스센터)
-	-	-	12	제주 통일관	자유총연맹(제주지회)
-	-	-	13	강원 통일관	강원특별자치도(강원플러스센터)

자료: 통일부

□ 비록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현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는 표현이 법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교육 수행 기관 및 시설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음.

실제로 통일부는 행정실무상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경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재정 지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센터명	'23년		'24년		'25년	
	운영주체	지원액	운영주체	지원액	운영주체	지원액
서울	총신대	154	총신대	168	총신대	143
경인	아주대	180	아주대	144	아주대	143
경남	경남대	163	창원대	138	창원대	143
경북	대구대	132	대구대	134	대구대	136
전남	동신대	98	세한대	64	세한대	89
전북	전북거래하나	110	우석대	83	우석대	91
충남	단국대	91	단국대	88	단국대	97
충북	서원대	95	청주대	82	청주대	91
강원	한라대	98	한라대	92	한라대	91
제주	제주대	82	제주대	76	제주대	70

자료: 통일부

〈 최근 3년간 통일관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24년	'25년
서울 통일관	9.5	8	7.7
부산 통일관	22.4	17.7	0.7
인천 통일관	32.9	31	40.5
광주 통일관	6.4	22.1	12.3
양구 통일관	10	2.3	-
고성 통일관	9.4	21.5	19.2
청주 통일관	1.2	-	10
충남 통일관	176.2*	15.6	16
경남 통일관	22	25	36
제주 통일관	7.6	8.9	14.4
전남 통일관	-	18.6	15
강원 통일관	-	-	7

자료: 통일부, '23년 충남통일관 시설리모델링 지원, '24년부터 리모델링 비용 미지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는 것은 통일교육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입법 기술적으로는 하단의 관련 입법례와 같이, 개별 시설의 설치 및 지정 조항³⁾ 내에 경비 지원 문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현행법 기준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개정안 기준 제9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제10조(통일관의 지정·운영)를 말함.

〈 관련 입법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한편,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이 포함되어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 범위에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통일교육 장려 방식 변경 관련

-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장려 방식을 ‘적극적으로 장려’로 변경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른 ‘모두 장려’라는 법문은 장려의 ‘대상과 범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개정안에 따른 ‘적극적으로 장려’라는 법문은 ‘방법과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법문 변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실행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조문과 개정안 조문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교육을 장려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임.

2.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립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변경 등(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u>들을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7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들어야 한다.</u>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 <u>시행한다.</u> ⑥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

<신 설>	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립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변경 관련

□ 먼저, 전문가 의견 수립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변경하는 안 제7조제4항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통일부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한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 2023년 및 2024년에는 기본계획의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립하였으나, 2025년에는 이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회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 수립현황 〉

수립연도	전문가 의견 수립여부	전문가 의견 수립사항
2023년	○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수립
2024년	○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수립
2025년	X	-

자료: 통일부

이처럼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가 통일부의 재량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이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일 문제는 우리 사회 내에서 세대 및 정치적 성향별로 시각 차이가 가장 뚜렷한 분야로서, 만약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큼.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정권 변화나 정책 기조 변동에 따라 기본계획 내용이 급변하는 것을 일정 부분 완충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 보임.

- 한편,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나. 통일교육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

- 다음으로,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6조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통일부는 기

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관례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음.

- 통일부는 2019년 최초로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2년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를 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와 방식이 부처의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통일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주기를 개정안과 같이 명문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개정안은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통일교육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교육으로, 그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일관적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4)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국회가 통일교육 정책의 실적과 성과를 직접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통일교육 정책을 보완·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6년 1월 28일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 대안⁵⁾을 의결한 바 있는데, 본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 및 성과 환류 체계 등 입법목적에서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 개정안 논의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5) 위원회 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 및 위원회 대안(2026. 1. 28)의 내용 비교〉

구분	개정안	대안
시행계획 수립 주기	매년 수립(공통)	매년 수립(공통)
평가결과 환류 범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국회 상임위 보고 대상	수립·변경한 시행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수립한 기본계획

자료: 통일부

- 한편, 통일부는 시행계획 신설, 전년도 추진실적 반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등은 2026년 1월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외통위 대안)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해당 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시·도별 1개 이상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의무화(안 제9조제 1항 후단 신설)

□ 개정안은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현행	개정안
<u>제6조의3</u>(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⑥ (생략)	<u>제9조</u>(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 ----- ----- ----- -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 이상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 2026년 현재 통일부는 전국을 10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경남·부산·울산,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세종, 충북, 강원, 제주)으로 구분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주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정되지 않음.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현황(2026년도⁶⁾) 〉

연 번	권 역	운영주체(소재지)
1	서울	송실대학교(서울)
2	경기·인천	아주대학교(경기)
3	경남·부산·울산	동의대학교(경남)
4	대구·경북	대구대학교(경북)
5	전남·광주	전남대학교(전남)
6	전북	(사)전북거래하나(전북)
7	충남·대전·세종	단국대학교(충남)
8	충북	청주대학교(충북)
9	강원	한라대학교(강원)
10	제주	제주대학교(제주)

자료: 통일부

이는 통일부가 2020년 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기존의 17개 시·도별 지정 방식에서 권역별 지정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임.⁷⁾ 이와 같은 권역별 지정 방식은 예산 및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실익이 있으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통일교육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통일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개정안과 같이 현행 권역별 지정 단위를 시·도별로 세분화할 경우, 지역별 통일교육 인프라를 보다 균형있게 확충할 수 있고, 거주 지역에 따른 통일교육 수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여 전 국민에게 균등한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26년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26.3.1.~'28.2.28.임.

7)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현황 : '04년 시범 지정(2개) → '05년(5개) → '06년(9개) → '07년~'09년(10개) → '10~'11년(19개) → '12~'19년(17개) → '20~'21년(7개) → '22년~현재(10개)

- 다만, 통일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발굴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의무화할 경우, 센터 운영이 형식화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별 인구 규모나 지리적 인접성(예: 대전·세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접 지역간 공동 운영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하나,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유사 입법례(경제교육지원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를 참고하여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할 필요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추진실적의 보고 및 평가 등(안 제11조 신설)

- 개정안 제11조는 지역통일교육센터장 및 통일관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 및 통일관장은 매년 소관 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보고·평가·제출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일부는 2026년 기준 10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하여 경상비 및 사업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총 11억 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3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통일관 중 오두산 통일전망대(통일부 직접 운영)를 제외한 12개 통일관⁸⁾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아닌 비목으로 사업비 2억 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 비교표 〉

구 분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운영주체	· 10개 권역 소재 대학 또는 민간단체	· 13개소 설치·운영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부-위탁운영 -12개 통일관: 지자체·민간·학교 등
예산 ('26년)	· 통일부 국고 보조금(경상비·사업비) 지원 : 1,188백만원	· 인건비·운영비 운영주체 자체부담 · 통일부 지원 : 234백만원
주요 프로그램	(기본사업): 통일강좌, 통일 체험학습, 통일교육 위원 워크숍, 센터 운영위 및 지역위 운영·지원 (특화사업): 권역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사업 (연합사업): 권역 협의체, 권역단위 경연·행사·축제 등 지역 간 연계 사업	(전시·체험시설 운영): 통일·교류·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전시관 운영 * 체험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각각 1개월씩 진행 (정보 제공):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

자료: 통일부

□ 개정안과 같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경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과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운영주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통일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8) 통일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운영주체인 민간, 지자체 등이 부담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

법률	규정내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 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 리 할 수 있다.

□ 아울러, 개정안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지역통일교육센터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년 보조사업의 실적을 중앙관서의 장(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통상 3년을 주기⁹⁾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연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적보고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구분		근거 조항
보조사업 실적 보고 (회계연도 종료시 등)	보조사업자→중앙관서의 장(통일부 장관)	보조금법 제27조 ¹⁰⁾
보조사업 평가 주체	기획예산처장관	보조금법 제15조 ¹¹⁾
보조사업 평가 주기	통상 3년	
보조사업 평가결과 국회 제출	기획예산처장관→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9)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5. 9.)에 따르면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2025년말을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2022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2023년에 신설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안)」(기획예산처, 2026.1.)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연장평가 대상을 보조사업 전체의 1/3에서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26년~)한다고 되어있음.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

- 이와 같이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평가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매년 별도의 평가 및 국회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절차와 일정 부분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보조금 평가제도와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일관의 경우 통일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가 전체 2억 3,400만원(통일관 1개소당 약 1,9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금액임. 이러한 재정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전년도 통일관 소관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나아가, 통일관은 운영주체가 자체 시설과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평가 대상을 통일부 지원 사업비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관의 전체 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경우 이미 기획예산처가 「보조금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하여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고,

통일관의 경우 민간단체가 자체 시설·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며, 정부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일관이 요청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26년 234백만원)하고 있어 전체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행·재정적 차등 지원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기타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2조제2호 등)

- 개정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제13조·제14조제2항·제18조제2항제2호는 인용조문이 각각 변경되었고, 안 제4조·제5조·제8조·제12조조부터 제20조까지는 조문번호가 각각 변경되었으며, 안 제10조는 조제목을 변경하면서 현행법 제6조의5·제6조의6의 내용을 그대로 이동하여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u>제6조의3</u> 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 ----- ----- ----- ----- <u>제9조</u> ----- ----- -----.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u>제6</u>	3. ----- ----- ----- ----- ----- <u>제10</u>

<u>조의4</u>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u>제3조의2</u>(통일교육 기본사항) (생략) <u>제3조의3</u>(통일교육주간) (생략) <u>제6조의2</u>(공공시설의 이용) (생략) <u>제6조의4</u>(통일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조</u>----- ----- --. <u>제4조</u>(통일교육 기본사항)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u>제5조</u>(통일교육주간) (현행 제3조의3과 같음) <u>제8조</u>(공공시설의 이용)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u>제10조</u>(통일관의 지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
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
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
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
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

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
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까지에서--
-----지
정신청, 변경통보,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삭 제>

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
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
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
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
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
교육의 실시) (생 략)

<삭 제>

제12조(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
육의 실시) (현행 제6조의7과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생략)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같음)

제13조(통일교육의 반영) -----

제4조제1항-----

 -----.

제14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조제1항-----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9조</u>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생략)	<u>제15조</u>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9조의2</u>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생략)	<u>제16조</u>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 성)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u>제10조</u> (통일교육협의회) (생략)	<u>제17조</u> (통일교육협의회) (현행 제 10조와 같음)
<u>제10조의2</u> (통일교육위원) ① (생 략)	<u>제18조</u> (통일교육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 으로 위촉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9조의2</u> 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2. <u>제16조</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제11조</u> (고발 등) (생략)	<u>제19조</u> (고발 등) (현행 제11조와 같음)
<u>제12조</u> (관계 기관의 협조) (생 략)	<u>제20조</u> (관계 기관의 협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개정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비롯하여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등은 법 체계 정비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각각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조문 번

호를 순차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 경우, 조 제목을 변경
함과 동시에 현행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및 제6조의
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의 내용을 그대로 이동하여 제4항부터 제6
항으로 신설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통합하였음

이러한 인용 조문 및 조문 번호의 변경은 법령의 체계적 정비 차원
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10조는 조제목을 ‘통일관의 지정 등’에서 ‘통일관의
지정·운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9조(지역통일교육센터
의 지정·운영)의 조제목과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해당 조항의 실질적 내용은 통일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통일관의 설치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변경된 조 제목만으로는 해당 조문의 주요 규정 사항을 충
분히 함축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를 보완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68